|  |  |  |
| --- | --- | --- |
|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잠행조례>의 폐지와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행조례>의 개정에 관한 결정**  국무원령 제691호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잠행조례>의 폐지와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행조례>의 개정에 관한 결정>은 이미 2017년 10월 30일 제191차 국무원상무회의를 통과하여 이를 발표한다. 발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창  2017년 11월 19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잠행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행조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 정비 용역(이하 ‘용역’) 제공,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및 수입 상품을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증치세 납세자로서, 본 조례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2조 제1관을 ‘증치세 세율’로 개정한다.  2.1 납세자가 상품, 용역, 유형자산 임대서비스 또는 수입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본 조 제2항, 제4항, 제5항에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세율은 17%이다.  2.2 납세자가 교통운송, 우정, 기초 전신, 건축, 부동산 임대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부동산 판매, 토지사용권 양도, 아래의 상품을 판매 또는 수입할 경우, 세율은 11%이다.  2.2.1 식량 등 농산품, 식물성 식용유 및 식용 소금  2.2.2 상수도, 난방, 냉방, 온수, 가스, 액화가스, 천연가스, 디메틸에테르(dimethyl ether), 메탄가스, 가정용 석탄제품  2.2.3 도서, 신문, 잡지, 비디오 제품 및 전자출판물  2.2.4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비닐  2.2.5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상품  2.3 납세자가 서비스, 무형자산을 판매 시, 본 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세율은 6%이다.  2.4 납세자가 상품을 수출 시, 세율은 ‘0’이다. 단,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2.5 경내 단위와 개인이 국무원 규정범위 내의 서비스, 무형자산을 경외로 판매하는 경우, 세율은 ‘0’이다.  3. 제4조 제1관 중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과세용역 제공(이하 ‘상품의 판매 또는 과세용역’)’을 ‘상품,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및 부동산 판매(이하 ‘과세매출’)’로 개정한다. 제 5조, 제6조 제1관, 제7조, 제11조 제1관, 제19조 제1관 제1항 중에 ‘상품 판매 또는 과세용역’을 ‘과세 매출행위 발생’으로 개정한다.  4. 제8조 제1관 중 ‘상품 또는 과세용역 매입’(이하 ‘상품 또는 과세용역 매입’), 제9조 중의 ‘상품 또는 과세용역 매입’을 ‘상품,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및 부동산 매입’으로 개정한다.  제8조 제2관 제3항 중에 ‘농산품 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 세금계산서 상 명기한 농산품 매입가격과 13%의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를 ‘농산품 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 세금계산서 상 명기한 농산품 매입가격과 11%의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 한다’고 개정하며,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8조 제2관 제4항을 삭제하고, 1개 항을 추가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한다. ‘(4)경외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또는 경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세무기관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취득한 원천징수액의 세금 완납증명서 상에 명기된 증치세액.’  5. 제10조를 ‘아래 항목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개정한다.  5.1 간이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과세항목, 증치세 면제 항목, 집단복지 또는 개인이 소비하는 상품,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및 부동산  5.2 비정상적으로 손실된 매입 상품 및 관련된 용역과 교통운송서비스  5.3 비정상적으로 손실된 재공품, 완제품이 소모한 상품(고정자산 불포함), 용역과 교통운송서비스의 매입  5.4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항목  6.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징수율은 3%이고,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7. 제21조 제1관과 제2관 제2항 중의 ‘상품 또는 과세용역 판매’를 ‘과세 매출행위 발생’으로 개정한다. 제2관 제1항을 (1) ‘과세 매출행위의 구매측이 개인소비자일 경우’로 개정한다. 아울러 제2관 제3항은 삭제한다.  8. 제22조 제1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고정 영업자가 타 현(시)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할 경우, 그 기구 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외출경영사항을 보고하는 동시에, 그 기구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판매지역 또는 용역발생지역의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판매지역 또는 용역발생지역의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구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이 세금을 추가 징수 한다. 제1관 제3항 중에 ‘상품 또는 과세용역 판매’를 ‘상품 또는 용역 판매’로 개정한다.  9. 제25조 제1관 중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서가 제정’ 앞에 ‘경내단위와 개인이 경외에서 서비스와 무형자산을 판매 시, 세금환급(면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한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세금환급(면제)를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0. 1개 조를 추가하여 제27조로 한다. 납세자가 증치세를 납부하는 유관사항은 국무원 또는 국무원 재정 및 세무주관부서가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별도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그 외, 개별 조문에 대해 문자개정을 하였다.  본 결정은 발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행조례>는 본 결정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개정을 하였고, 조문번호에 대해 상응한 조정을 하여 다시 발표한다. |  | **国务院关于废止《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和修改《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的决定**  国务院令第691号  《国务院关于废止〈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和修改〈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的决定》已经2017年10月30日国务院第191次常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总理　　李克强  2017年11月19日  国务院决定废止《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同时对《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作如下修改：  一、将第一条修改为：“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货物或者加工、修理修配劳务（以下简称劳务），销售服务、无形资产、不动产以及进口货物的单位和个人，为增值税的纳税人，应当依照本条例缴纳增值税。”  二、将第二条第一款修改为：“增值税税率：  “（一）纳税人销售货物、劳务、有形动产租赁服务或者进口货物，除本条第二项、第四项、第五项另有规定外，税率为17%。  “（二）纳税人销售交通运输、邮政、基础电信、建筑、不动产租赁服务，销售不动产，转让土地使用权，销售或者进口下列货物，税率为11%：  “1.粮食等农产品、食用植物油、食用盐；  “2.自来水、暖气、冷气、热水、煤气、石油液化气、天然气、二甲醚、沼气、居民用煤炭制品；  “3.图书、报纸、杂志、音像制品、电子出版物；  “4.饲料、化肥、农药、农机、农膜；  “5.国务院规定的其他货物。  “（三）纳税人销售服务、无形资产，除本条第一项、第二项、第五项另有规定外，税率为6%。  “（四）纳税人出口货物，税率为零；但是，国务院另有规定的除外。  “（五）境内单位和个人跨境销售国务院规定范围内的服务、无形资产，税率为零。”  三、将第四条第一款中的“销售货物或者提供应税劳务（以下简称销售货物或者应税劳务）”修改为“销售货物、劳务、服务、无形资产、不动产（以下统称应税销售行为）”；将第五条、第六条第一款、第七条、第十一条第一款、第十九条第一款第一项中的“销售货物或者应税劳务”修改为“发生应税销售行为”。  四、将第八条第一款中的“购进货物或者接受应税劳务（以下简称购进货物或者应税劳务）”、第九条中的“购进货物或者应税劳务”修改为“购进货物、劳务、服务、无形资产、不动产”。  将第八条第二款第三项中的“按照农产品收购发票或者销售发票上注明的农产品买价和13%的扣除率计算的进项税额”修改为“按照农产品收购发票或者销售发票上注明的农产品买价和11%的扣除率计算的进项税额，国务院另有规定的除外”。  删去第八条第二款第四项，增加一项，作为第四项：“（四）自境外单位或者个人购进劳务、服务、无形资产或者境内的不动产，从税务机关或者扣缴义务人取得的代扣代缴税款的完税凭证上注明的增值税额”。  五、将第十条修改为：“下列项目的进项税额不得从销项税额中抵扣：  “（一）用于简易计税方法计税项目、免征增值税项目、集体福利或者个人消费的购进货物、劳务、服务、无形资产和不动产；  “（二）非正常损失的购进货物，以及相关的劳务和交通运输服务；  “（三）非正常损失的在产品、产成品所耗用的购进货物（不包括固定资产）、劳务和交通运输服务；  “（四）国务院规定的其他项目。”  六、将第十二条修改为：“小规模纳税人增值税征收率为3%，国务院另有规定的除外。”  七、将第二十一条第一款和第二款第二项中的“销售货物或者应税劳务”修改为“发生应税销售行为”；将第二款第一项修改为：“（一）应税销售行为的购买方为消费者个人的”；删去第二款第三项。  八、将第二十二条第一款第二项修改为：“（二）固定业户到外县（市）销售货物或者劳务，应当向其机构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报告外出经营事项，并向其机构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未报告的，应当向销售地或者劳务发生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未向销售地或者劳务发生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的，由其机构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补征税款”；将第一款第三项中的“销售货物或者应税劳务”修改为“销售货物或者劳务”。  九、在第二十五条第一款中的“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制定”之前增加“境内单位和个人跨境销售服务和无形资产适用退（免）税规定的，应当按期向主管税务机关申报办理退（免）税”。  十、增加一条，作为第二十七条：“纳税人缴纳增值税的有关事项，国务院或者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经国务院同意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此外，还对个别条文作了文字修改。  本决定自公布之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根据本决定作相应修改并对条文序号作相应调整，重新公布。 |